

『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,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변경
 -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
 -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

-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
(안 제2조)
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
→ 제2조제1호 및 제2호
- 유사·중복된 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(안 제10조)
 - 녹색성장위원회 → 환경정책위원회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,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,
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- 본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법인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